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11. .
제 출 자 유매희, 한종우 의원

1. 제안이유

-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농촌 대민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대민봉사 환경조성과 군인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보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군인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 ~ 2025. 11. .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 2025. 10. . ~ 2025. 10. .
 - 나) 협의결과 :
 - 3) 관련부서 : 농업정책과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대민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란 군인이 농촌 일손돕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민봉사자”란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을 말한다.
4.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인 중 김포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 한다.

제4조(계약체결)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 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대민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아 시장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봉사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청구)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험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기관에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군인사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9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 5. 24.]